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정사항의 시행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연합정보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연합정보센터(이하 “연합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28조제
2항에 따라 파견된 관계관 중에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가 된다. 다만, 현장지휘센터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합동방사선감시센터(이하 “합동방사
선감시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한국원자

력안전기술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법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합동
방사선비상진료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한국원자력의학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하
는 자가 된다.

제32조의2,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주민보호지원본부(이하 “주민보호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은 행
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민보호지원”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조
정한다.

③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장은 주민보호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
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및 주민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장은 주민보호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기능별로 실무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의2(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능방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대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면적의 교육시설을 갖출 것
 2. 방사선·능 계측기, 개인선량계, 방호장구 등 실습교육에 필요한 방사능방재 관련 장비를 갖출 것
 3.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교육내용을 고려한 교육시행 절차서 또는 규정을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할 것
 - 가. 방사능방재 관련 분야의 면허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나. 방사능방재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 다. 원전 주제어실 운전, 방사선 또는 방사능방재대책, 방사선비상진료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기관·전문기관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의3(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3조의2제3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합동으로 평가할 때에는 사전에 평가방법 등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제3장제2절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취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6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제2항제1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법 제20조의2제3항”으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법 제37조제4항”을 각각 “법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제40조의2의 제목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비용”을 각각 “부담금”으로 한다.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40조의3의 제목 “(비용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을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5조제2항”을 “법 제45조의2제1항”으로, “비용”을 “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자력사업자등”을 각각 “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비용”을 각각 “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원자력사업자등이 납부한 비용”을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납부한 부담금”으로, “비용을”을 “부담금을”로 한다.

별표 3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 및 같은 표 제1호 제목 중 “비용”을 “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가목 중 “원자력사업자”를 “원자력사업자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원자

력사업자등”을 “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 3]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제19조관련)

2.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

구 분	대 응 절 차(대응조치)		
	백 색 비 상	청 색 비 상	적 색 비 상
원자력사업자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의 보고 2.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생한 방사능 재난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3.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사선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응급조치요원 등의 방사선 피폭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 4.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상대응시설의 운영 5. 제24조에 따른 원자력 시설 건물 내에서 방사능재난등으로 인하여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와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중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에 대한 응급조치	1. 백색비상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대응조치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 비상계획에 따른 원자력사업자비상대책본부의 설치·운영 3.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요원의 파견, 기술적 사항의 자문, 방사선측정장비 등의 대여 등 지원 4. 제24조에 따른 원자력 시설 부지 내에서 방사능재난등으로 인하여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와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중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에 대한 응급조치	청색비상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대응조치

원자력안전위원회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 2. 법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연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1. 백색비상란 제1호에 따른 대응조치 2. 방사선비상의 사고 정도와 그 상황이 방사능 재난의 선포기준에 해당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사능재난 발생을 선포한 경우 가.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의하여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 나.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방사능재난 상황의 개요 등을 보고 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선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안의 주민에게 방사능재난의 발생상황을 알리게 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게 함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4.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및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장의 지명	청색비상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응조치
중앙방사	—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청색비상란 제1

능방재대책본부장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운영 2. 법 제28조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 대한 지휘 3.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및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장에 대한 지휘	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대응조치
행정안전부장관	—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운영	청색비상란에 따른 대응조치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장	—	1.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운영 2. 법 제2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설치·운영 3. 법 제29조제1항 각호에 따른 권한의 행사	청색비상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대응조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설치·운영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설치·운영 2.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이 법 제2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결정한 경우의 시행	청색비상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응조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위협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① ~ ③ (생략)	제7조(위협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11.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2. · 13. (생략)	12. · 13.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방사능재난 발생통보 및 대응)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선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안의 주민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방사능재난 발생통보 및 대응)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 ----- ----- ----- -----.

1. 원자력시설등의 사고 상태 등 방사능재난 상황의 개요	1. ----- -----
2. 방사능재난 긴급대응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는 구역	2. ----- -----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필요한 대응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 ----- ----- ----- --.
1. 방사능재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행동요령의 전파	1. ----- -----
2.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의 시행	2. 법 제2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정사항의 시행
제31조(연합정보센터) 법 제28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관계관중에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현장지휘센터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시·군·구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31조(연합정보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연합정보센터(이하 “연합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관계관 중에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현장지휘센터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신 설>

② 법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합동방사선감시센터(이하 “합동방사선감시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법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한국원자력의학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32조의2(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주민보호지원본부(이하 “주민보호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민보호지원”이라 한다)

<신 설>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③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장은 주민보호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및 주민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장은 주민보호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실무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의2(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능방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대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면적의 교육시설을 갖출 것
2. 방사선·능 계측기, 개인선량계, 방호장구 등 실습교육에 필요한 방사능방재 관련 장비를 갖출 것
3.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교육내용을 고려한 교육시행 절차서 또는 규정을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할 것
 - 가. 방사능방재 관련 분야의

<신 설>

면허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방사능방재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원전 주제어실 운전, 방사선 또는 방사능방재대책, 방사선비상진료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기관·전문기관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의3(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신 설>	⑦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1. 법 제20조제1항(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 ----- ----- 제외한다), 법 제20조의2제3항 ----- -----
<신 설>	제36조의2(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취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6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2. (생 략) 3.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생 략)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원자력학원에 위탁한다. 1. (생 략) 2.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3. (생 략) 제40조의2(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사·검사·교육 및 평가를 받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3에서 “원자력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3에서 “비용”이라	1의2. 2. (현행과 같음) 3. 법 제37조제5항----- ----- ----- 4.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7조제5항----- ----- ----- 3.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40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제40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및 10월 31일까지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해당 연도 <u>비용</u> 의 규모를 그 산출내용을 명시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② ----- ----- <u>부담</u> 금----- -----.	③ <u>비용</u> 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u>부담금</u> ----- -----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u>비용</u> 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 <u>부담금</u> ----- ----- ----- --.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u>원자력</u> 사업자등이 납부한 <u>비용</u> 이 해당 업무의 변경·취소 등의 사유로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u>비용</u> 을 정산하여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④ ----- <u>원자력</u> <u>관계사업자등이 납부한 부담금</u> ----- ----- ----- ----- <u>부담금을</u> --- ----- -----.
제40조의3(<u>비용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u>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u>비용</u> 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과 함께 산출내용,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u>원자력사업자</u>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0조의3(<u>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u> 등) ① ----- --- 법 제45조의2제1항--- <u>부</u> <u>담금</u> ----- ----- ----- <u>원자력관계사</u> <u>업자등</u> -----.		
② <u>원자력사업자</u>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해당 기한까지 <u>비용</u> 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u>원자력관계사업자</u> 등----- ----- ----- <u>부담금</u> ----- -----.		
1. 12회 균등 분할 납부: 다음 연도 매월 말일까지	1. ----- -----		
2. 4회 균등 분할 납부: 다음 연	2. -----		